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8. 9. 5.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7월 29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8년 8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55회 임시회 제 4 차 위원회 ('98. 9. 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하수과장 조 병 현

가. 제안이유

하수도법시행령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과태료부과대상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과태료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조례안은 그동안 규칙으로 정하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으나 '97년 9월 5일 대통령령 제15473호로 개정된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목적, 과태료의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및 청문에 관한 사항, 징수결정, 납입고지, 납입기한, 납입장소, 체납독촉, 이의신청, 이의가 제기된 경우 법원통보 등에 관한 내용 등이 규정되어야 하나, 안 제2조와 같이 부과대상을 하수도법의 적용규정만 정하는 것 보다는 부과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과태료를 징수할 때에는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징수부에 등재하도록 총리령인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안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내로 납입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안 제5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는 등, 새로이 신설될 내용과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내용 및 자구정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특히 동 조례안에서 과태료의 금액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과태료의 금액결정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유남철 위원) : 하수도 손괴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 지?
- 답변요지(조병현 하수과장) : 개정된 하수도법시행령에서 과태료부과징수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질의요지(김세창 위원) : 하수도법시행령이 '97. 9. 5 개정되었음에도 지금까지야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답변요지(조병현 하수과장) :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기간 등 제반절차에 필요한 시일이 소요됨.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 : 하수도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하수과장 답변중에서 위 위반자에 대해서 20만원을 부과한다는 답변은 어느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 답변요지(조병현 하수과장) :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각구 과태료부과금액이 달라질 경우가 있어, 서울시 준칙으로 각구 공통 20만원을 부과토록 함.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일자및 발의자 : '98. 9. 5. 김 세 창 위원외 1

나. 수정이유 : 과태료징수절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목적, 과태료의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및 청문에 관한 사항, 징수결정, 납입고지, 납입기한, 납입장소, 체납독촉, 이의신청, 이의가 제기된 경우 법원통보 등에 관한 내용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바, 일부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코자 함.

다. 수정골자

-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2조)
- 징수결정 조항을 신설 규정함. (안 제4조)
- 과태료 납입고지서 발행시 납입자의 주소, 성명과 기타 납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5조)
- 납입기한 30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함. (안 제6조)

7. 심사결과 : 수정(안)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사항 : 수정(안)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범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98. 9.
제안자 : 총무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과태료징수절차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목적, 과태료의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및 청문에 관한 사항, 징수결정, 납입고지, 납입기한, 납입장소, 채납독촉, 이의신청, 이의가 제기된 경우 법원통보 등에 관한 내용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바, 일부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코자 함.

2. 주요수정골자

-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2조)
- 징수결정 조항을 신설 규정함. (안 제4조)
- 과태료 납입고지서 발행시 납입자의 주소,성명과 기타 납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5조)
- 납입기한 30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함. (안 제6조)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중 다음과 같
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부과대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 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4.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
5.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6.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안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납부대상자를 "납입대상자"로 "과태료 납부고지서
를 발부하여야 한다"를 "납입자의 주소, 성명, 납입금액, 납입장소, 회계연도,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과 기타 납입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
행하여야 한다" 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징수결정)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징수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안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납입기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내로 납입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입자가

남입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므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내로 정할 수 있다.

안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결정할 때에는"을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으로 하고 "수납부(채납부)"를 "수납부"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채납독촉을 한 때에는 징수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채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안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안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지체없이"로 한다.

안 제9조 및 제10조를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2조(부과대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태료로 한다.</p> <p>(신설)</p>	<p>제2조(부과대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4.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 5.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6.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p>제4조(징수결정)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징수부에 등재하여야 한다.</p>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범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안 번호	28A
----------	-----

제출년월일 : 1998. 7.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범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과태료부과대상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과태료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관계법령

- 하수도법(1994.8.3. 법률 제4782호) 제42조

- 하수도법시행령(1997.9.5. 대통령령 제15,473호) 제24조

4. 참고사항

가. 예 산 : 필요없음.

나. 입법예고 : 1998.4.10.~1998.4.25(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 1998-11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대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태료로 한다.

제3조 (위반행위의 조사등) ①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납부대상자에게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한 과태료 처분통지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납부대상자의 주소불명 등 기타의 사유로 납부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하여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배달증명으로 송부한 납부고지서가 다시 반송된 때에는 이를 구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기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처분통지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수납부 등)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결정한 때에는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체납독촉등) ①구청장은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입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과태료 납부 독촉장과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준 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부과징수,수납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세부과징수규칙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